**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이 명 박** 인

**2011년 11월 25일**

**국 무 총 리 김 황 식**

**국 무 위 원**
**국토해양부 장 관 권 도 엽**

## ◉대통령령 제23319호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농업기계화촉진법」"을 "「농업기계화 촉진법」"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자동차정책기본계획의 변경 등) ① 법 제4조의2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이하 이 조에서 "기본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한 부문별 사업비용을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기본계획에서 정한 부문별 사업기간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관계 법령 또는 관련 계획의 변경에 따라 기본계획의 내용 변경이 부득이한 경우
4. 계산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그 변경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5. 그 밖에 기본계획의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해당 기본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제5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시·도지사"로 한다.

제8조의2, 제9조 및 제9조의2부터 제9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자동차부품) 법 제2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품·장치 또는 보호장구"(이하 "자동차부품"이라 한다)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브레이크호스

2. 좌석안전띠

3.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등화장치

4. 후부반사기

5. 후부안전판

제9조(내압용기검사의 생략) 법 제35조의6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압용기에 대해서는 법 제35조의6제1항 본문에 따른 내압용기검사(이하 “내압용기검사”라 한다)의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다목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생략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제조하는 내압용기

가. 수출용으로 제조하는 내압용기

나. 정부·지방자치단체·자동차제작자·내압용기제조자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연구기관이 시험용 또는 연구개발용으로 제조하는 내압용기

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의2에 따라 외국용기등의 제조등록을 한 자가 제조하는 내압용기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수리하는 내압용기

가. 내압용기제조자가 용기밸브 또는 용기안전장치의 부품을 교체하는 내압용기

나. 자동차정비업자(내압용기 내의 잔류가스를 회수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춘 자만 해당한다)가 용기밸브 또는 용기안전장치를 교체·수리하는 내압용기(액화석유가스용 내압용기만 해당한다)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수입하는 내압용기

가. 시험용 또는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내압용기

나. 주한(駐韓) 외국기관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것으로서 외국에서 내압용기검사에 준하는 검사를 받은 내압용기

다. 내압용기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견본으로 수입하는 내압용기

라. 수출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내압용기

제9조의2(내압용기재검사 비용의 지원)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5조의8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검사를 대행하는 자(이하 “자동차검사대행자”라 한다)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35조의8제1항 본문에 따른 내압용기재검사(이하 “내압용기재검사”라 한다)에 필요한 시설, 장비 및 인력에 드는 비용

2. 내압용기재검사와 관련된 조사, 연구 및 전산 관련 시설에 드는 비용

3. 내압용기의 파기 및 각인에 드는 비용

4. 그 밖에 내압용기재검사의 효율적 수행 및 관리를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자동차검사대행자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내압용기재검사 비용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계획서

2. 소요비용 산정내역

3. 자금집행계획

4. 그 밖에 내압용기재검사의 비용지원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범위 및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의3(내압용기에 대한 위해방지 조치) ① 법 제35조의10제2항에서 “가스유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함을 말한다.

1. 내압용기 내의 가스유출

2. 용기밸브 및 용기안전장치의 중대한 손상

② 법 제35조의10제3항에서 “폭발사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하고 명백한 결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함을 말한다.

1. 내압용기의 폭발로 인한 내압용기의 파손사고

2. 내압용기의 압력으로 인한 내압용기의 파열사고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함의 유형 및 종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의4(손실보상) ① 법 제35조의10제5항 본문에 따른 손실보상은 국토해양부장관과 손실을 입은 자(자동차 소유권 및 사용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와의 상호 협의에 따라 정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 또는 내압용기 관련 전문가 및 전문기관에 대하여 자문 및 의견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협의, 자문 및 의견제출 등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으로, “사항”을 “변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임원(대표자를 포함한다)의 주소변경

제13조의3부터 제13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3(국제조화기본계획의 변경) 법 제68조의3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 기본계획(이하 이 조에서 “국제조화기본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한 부문별 사업비용을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국제조화기본계획에서 정한 부문별 사업기간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관계 법령 또는 관련 계획의 변경에 따라 국제조화기본계획의 내용 변경이 부득이한 경우
4. 계산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그 변경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5. 그 밖에 국제조화기본계획의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13조의4(전담기관의 지정절차) ① 법 제68조의4에 따른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제13조의5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
2. 사업추진계획서
3. 자금집행계획서
4. 그 밖에 전담기관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정기준에의 적합 여부와 전담기관의 사업 및 운영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지정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절차 및 지정고시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의5(전담기관의 지정기준 및 업무범위) ① 전담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담기관 업무 수행을 위한 상설 조직을 갖출 것
2. 전담기관 업무 수행을 위한 기술 인력을 갖출 것
3. 전담기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4. 전담기관의 운영 및 업무추진에 필요한 내부 규정을 갖출 것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갖출 것

② 전담기관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선진화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업무

2. 자동차안전기준 등과 관련된 제도 및 정책의 조사·분석 업무

3. 자동차안전기준 등에 대한 기술검토 및 개선방안 마련 업무

4. 자동차안전기준 등과 관련된 국제협력 및 전문가 양성 업무

5. 그 밖에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를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기준 및 업무 범위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의6(시범사업)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68조의8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이하 이 조에서 “시범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시범사업의 목표, 전략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2. 시범사업에 적용되는 자동차기술에 관한 사항

3. 시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범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신청으로 시범사업의 대상 또는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범사업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시범사업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시범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 인력 및 시설 등에 관한 서류

3. 시범사업의 대상 및 지역에 관한 설명자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시범사업의 효율적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시범사업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범사업기본계획에 적합할 것

2. 시범사업의 실시에 대한 재원조달계획이 적정하고 실현 가능할 것

3. 자동차기술의 연구·개발 및 이용·보급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범사업기본계획의 수립절차, 시범사업의 지정절차 및 방법, 시범사업의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의2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 제44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를 “자동차검사대행자”로 한다.

제15조제5항 후단 중 “자동차매출액”을 “자동차, 자동차부품 또는 내압용기 매출액”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대행자”를 “자동차검사대행자”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법 제84조제1항제9호·제10호 및 같은 조 제2항제5호·제7호”를 “법 제84조제2항제9호·제10호 및 제3항제5호·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7조제3항”을 “법 제77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4호를 삭제한다.

1. 법 제35조의8제1항에 따른 내압용기재검사에 관한 업무(자동차검사대행자가 행하는 검사 업무는 제외한다)

제18조제1항 중 “법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77조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19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77조제10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한다.

1. 법 제35조의6제1항에 따른 내압용기검사에 관한 업무
2. 법 제35조의6제2항에 따른 내압용기 파기에 관한 업무
3. 법 제35조의6제3항에 따른 내압용기에 대한 각인 또는 표시에 관한 업무

제20조 본문 중 “법 제84조제1항 및 제2항”을 “법 제8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한다.

별표 1 Ⅱ의 위반행위란 제12호 중 “법 제58조제4항”을 “법 제58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란 제13호 중 “법 제58조제5항”을 “법 제58조제6항”으로 하며, 같은 란 제14호 중 “법 제58조제6항”을 “법 제58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표 Ⅲ을 다음과 같이 한다.

Ⅲ. 자동차제작자등에 대한 부과기준(법 제74조제2항 관련)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징금액 |
|---|---|---|
| 1. 법 제30조제1항(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 | 법 제74조 제2항제1호 | 해당 자동차, 자동차부품 또는 내압용기 매출액의 1천분의 1(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으로 한다) |
| 2. 법 제30조의2제1항(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동차부품을 판매한 경우 | 법 제74조 제2항제2호 | |
| 3. 법 제35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내압용기검사에 합격하지 않은 내압용기를 판매한 경우 | 법 제74조 제2항제3호 | |

비고: 매출액은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동차,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동차부품 또는 내압용기검사에 합격하지 않은 내압용기 판매 개수(대수)에 자동차, 자동차부품 또는 내압용기 각각의 판매가격을 곱하여 산출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 제2호의 범칙금액의 승용자동차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
| 승용자동차 및<br>이륜자동차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사항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사항이 변경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부과기준(무거운 부과기준이 같은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부과기준을 말한다)을 따르되, 가장 무거운 부과기준의 2분의 1까지 그 부과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각 부과금액을 합한 금액을 넘을 수 없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8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만원) |
|---|---|---|
| 가. 법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규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법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말소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4조제2항제1호·제5호 | |
| 1) 등록신청대행 의무자가 등록신청대행을 거부한 경우 | | 50 |
| 2) 등록신청대행기간이 지난 경우 | | |
| 가) 10일 이내인 때 | | 5 |
| 나)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1일 초과 시마다 | | 1 |
| 나.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4조제2항제2호 | 50 |
| 다. 법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의 재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4조제2항제3호 | 10 |
| 라. 법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 또는 봉인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인 경우는 제외한다) | 법 제84조제2항제4호 | 30 |
| 마. 법 제10조제5항(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법 제82조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법 제84조제3항제1호 | 30 |
| 바. 법 제11조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4조제3항제2호 | |
| 1) 신청기간만료일부터 90일 이내인 때 | | 2 |
| 2) 신청기간만료일부터 9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3일 초과 시마다 | | 1 |
| 사.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말소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4조제3항제2호 | |
| 1) 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 | |
| 가) 신청기간만료일부터 10일까지 | | 5 |
| 나) 신청기간만료일부터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1일 초과 시마다 | | 1 |
| 2) 법 제13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 | 20 |

| | | |
|---|---|---|
| 아. 법 제13조제8항을 위반하여 수출의 이행 여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4조제2항제6호 | |
| 1) 신고기간만료일부터 10일 이내의 기간을 경과한 경우 | | 5 |
| 2) 신고기간만료일부터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1일 초과 시마다 | | 1 |
| 자. 법 제13조제10항을 위반하여 말소등록 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려는 경우에 법 제8조에 따른 신규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4조제2항제7호 | |
| 1) 수출을 사유로 말소등록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려는 경우 | | |
| 가) 신청기간만료일부터 10일 이내의 기간을 경과한 경우 | | 5 |
| 나) 신청기간만료일부터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1일 초과 시마다 | | 1 |
| 2) 그 밖의 사유로 말소등록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려는 경우 | | 10 |
| 차. 법 제18조제1항(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증을 갖춰 두고 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증을 갖춰 두는 경우와 피견인 자동차의 경우는 제외한다) | 법 제84조제2항제8호 | |
| 1) 자동차의 경우 | | 5 |
| 2) 이륜자동차의 경우 | | 2 |
| 카. 법 제22조제1항(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차대번호와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4조제2항제9호 | 100 |
| 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 명령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 법 제84조제2항제10호 | |
| 1)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대처를 위한 자동차 운행제한명령을 위반한 경우 | | 50 |
| 2) 극심한 교통체증 지역의 발생예방 또는 해소를 위한 자동차 운행제한명령을 위반한 경우 | | 10 |
| 3)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자동차 운행제한명령을 위반한 경우 | | 5 |

| | | |
|---|---|---|
| 파. 법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br>1) 기간을 경과한 경우<br>가) 10일 이내인 경우<br>나)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1일 초과 시마다<br>2) 목적을 위반한 경우<br>3) 임시운행허가증 또는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 법 제84조제2항제11호 | <br><br><br>5<br>1<br>50<br>10 |
| 하. 법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br>1) 10일 이내의 기간을 경과한 경우<br>2)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1일 초과 시마다 | 법 제84조제2항제12호 | <br><br>3<br>1 |
| 거.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경우<br>1) 제8조제2항제7호의 전기·전자장치 중 최고속도제한장치 및 제8조제2항제18호 중 운행기록계<br>2) 제8조제1항제5호·제6호 및 제2항제7호(연료장치 및 최고속도제한장치는 제외한다)<br>3) 제8조제2항제11호·제19호<br>4) 제8조제1항제7호 및 제2항제2호(차축은 제외한다), 제3호, 제6호, 제14호부터 제17호까지 및 제18호(주행거리계, 운행기록계는 제외한다) | 법 제84조제2항제13호 | <br><br>100<br><br>30<br><br>5<br>3 |
| 너. 법 제30조의3제2항(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1조제4항(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3조제3항(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2조제2항 및 제73조제1항을 위반하여 확인·조사·보고·검사 또는 단속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 | 법 제84조제2항제14호 | 100 |
| 더. 법 제31조의2제1항(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상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4조제2항제15호 | 100 |
| 러. 자동차를 산 사람에게 법 제33조제1항(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료 제공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4조제3항제3호 | 50 |

| | | |
|---|---|---|
| 머. 법 제3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저속전기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 법 제84조제2항제15호의2 | 10 |
| 버. 법 제35조의5를 위반하여 내압용기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내압용기가 장착된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경우<br>1) 내압용기(용기밸브와 용기안전장치 등 부속장치는 제외한다)<br>2) 용기밸브와 용기안전장치 등 부속장치 | 법 제84조제2항제13호의2 | <br><br>100<br>30 |
| 서. 법 제35조의10제4항에 따른 내압용기가 장착된 자동차의 사용정지 또는 제한 및 고압가스의 폐기 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84조제1항 | 500 |
| 어. 법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기점검을 받지 않은 경우<br>1) 점검을 받아야 할 기간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경우<br>2) 점검을 받아야 할 기간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3일 초과 시마다 | 법 제84조제3항제4호 | <br>1<br>1 |
| 저. 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br>1) 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경우<br>2) 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3일 초과 시마다 | 법 제84조제3항제5호·제6호 | <br>2<br>1 |
| 처. 법 제45조제8항(법 제45조의2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4조제2항제16호 | 10 |
| 커. 법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택시미터의 검정을 받지 않고 사용한 경우<br>1) 제작·수리 또는 수입에 관한 검정을 받지 않고 사용한 경우<br>2) 사용에 관한 검정을 받지 않고 사용한 경우<br>가) 검정을 받아야 할 기간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때<br>나) 검정을 받아야 할 기간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1일 초과 시마다 | 법 제84조제2항제17호 | <br>100<br><br>30<br>1 |
| 터. 법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용 신고를 하지 않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 법 제84조제2항제18호 | 50 |
| 퍼.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의 변경 사항이나 사용 폐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br>1) 신고기간만료일부터 90일 이내인 경우<br>2) 신고기간만료일부터 90일 초과, 180일 이내인 경우<br>3) 신고기간만료일부터 180일을 초과한 경우 | 법 제84조제3항제2호 | <br>2<br>6<br>10 |

| | | |
|---|---|---|
| 허.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의무를 위반한 경우 | 법 제84조제3항제2호 | 20 |
| 고. 법 제49조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4조제3항제7호 | 30 |
| 노. 법 제50조를 위반하여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이륜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경우<br>1) 연료장치 및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br>2) 그 밖의 안전기준에서 정한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법 제34조의 구조·장치 변경승인 대상은 제외한다) | 법 제84조제2항제19호 | <br>20<br>3 |
| 도. 법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경우 | 법 제84조제2항제20호 | 100 |
| 로. 법 제55조를 위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양수, 합병(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휴업·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br>1) 양도·양수 또는 합병(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br>2) 휴업·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4조제2항제21호 | <br>100<br>10 |
| 모. 자동차정비업자가 법 제5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 법 제84조제2항제22호 | 30 |
| 보. 법 제58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거나 관계 증서의 사본 또는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br>1) 법인인 경우<br>2) 법인이 아닌 경우 | 법 제84조제2항제23호 | <br>70<br>35 |
| 소.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 법 제84조제3항제8호 | 20 |

비고

1. 위 표 아목, 자목1) 및 커목2)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 금액의 상한은 각각 50만원으로, 바목, 어목 및 저목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 금액의 상한은 각각 30만원으로 한다.
2. 위반행위가 가목2) 및 파목1)에 함께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목2)의 기준에 따라 부과하고, 파목1) 및 하목에 함께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목1)의 기준에 따라 부과한다.

**◇개정이유**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내압용기 관련 업무의 이관, 자동차안전기준의 국제기준과의 조화 제도 및 자동차기술 시범사업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0721호, 2011. 5. 24. 공포, 11. 25.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절차, 내압용기검사의 생략기준, 내압용기재검사의 비용지원기준, 내압용기의 위해방지기준 및 손실보상절차, 국제조화업무를 위한 전담기관의 지정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기준 마련(안 제4조 신설)

1) 자동차정책기본계획에서 정한 부문별 사업비용 및 사업기간을 일정 범위에서 변경하거나 관련 법령 및 계획의 변경에 따라 그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2)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의 변경과 관련하여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변경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의 효율적 추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나. 내압용기 관련 업무의 세부 추진기준 마련(안 제9조 및 제9조의2부터 제9조의4까지 신설)

1) 내압용기검사의 생략기준, 내압용기재검사의 수행기관에 대한 지원기준 및 지원절차, 내압용기의 결함 내용, 내압용기가 장착된 자동차의 사용 정지 등에 따른 손실보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함.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 「자동차관리법」으로 이관된 내압용기 관련 업무의 세부기준이 마련됨으로써 자동차용 내압용기의 안전관리 업무가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자동차의 안전 및 성능에 대한 관리수준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자동차안전기준의 국제조화를 위한 세부기준 마련(안 제13조의3부터 제13조의5까지 신설)

1) 자동차안전기준의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위한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기준을 정하고, 자동차안전기준에 대한 기술검토를 위한 전담조직의 지정절차, 지정기준 및 업무범위에 대한 세부규정을 마련함.

2) 자동차안전기준의 국제조화에 필요한 세부적인 업무처리 및 자동차안전기준 관련 업무추진을 위한 전담기관에 관한 규정이 마련됨으로써 자동차안전기준의 국제조화업무가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됨.

라. 자동차기술 시범사업의 세부기준 마련(안 제13조의6 신설)

1) 자동차기술 시범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수립되는 시범사업기본계획에의 포함 내용, 시범사업의 세부적인 지정절차 및 지정기준 등을 마련함.

2) 자동차기술의 시범사업의 실시를 위한 세부기준이 마련되어 자동차기술 시범사업의 활성화와 이를 통한 자동차기술의 연구·개발 및 이용·보급이 보다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